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1가단5135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장혁재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10. 5.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사단법인 C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9. 5. 29.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5. 28.(이후 2015. 5. 22.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1’이라 한다), ② 2010. 7. 12.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7. 11.(이후 2014. 9. 1.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2’라 한다), ③ 2010. 7. 12.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1. 7. 11.(이후 2014. 9. 1.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3’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3개의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4. 5. 24.경 소외 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9. 2. 보증1과 관련하여 201,777,888원의, 보증2와 관련하여 171,511,136원의, 보증3과 관련하여

85,755,568원의 보증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저작권 양도계약 체결

(1)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은 그룹 F의 리더 가수 겸 작곡가, 작사가로서 활동하면서 255곡의 음악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채무자 회사가 2014. 5.경 부도를 내면서 도산하게 되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2016. 4.경 서울회생법원 2016간회단100023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2016. 11. 17. 간이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2017. 7. 21. 간이회생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시인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609,053,706원(= 원금 462,487,415원 + 개시전 이자 146,566,293원)이었으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 금액이 188,806,649원(= 원금 143,371,099원 + 개시전 이자 45,435,551원)으로 확정되었다.

(3)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55곡의 음악저작권 중 ‘G(저작물코드 H)’을 제외한 254곡의 음악저작권(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권’이라 한다)을 2020. 10. 5. 피고에게 양도대금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C에 신탁된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분배청구권 및 수익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5)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2020. 10. 5. 당시의 이 사건 음악저작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액은 548,186,185원에 이른다.

라. B의 재산 상태

(1) B은 2016. 11. 17. 간이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회생개시결정일 당시의 부채는 총 1,186,313,723원, B의 적극자산은 합계 450,370,241(= 보통예금 7,801원, 저작권수입 미수금 52,886,640원, 저작재산권 평가액 397,475,600원)이었으나, 2016. 11. 17. 간이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B의 전체 채무액은 합계 416,240,236원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B에 대하여는 2017. 7. 21. 간이회생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졌는데, B은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여 간이회생종결 당시의 채무액은 위 회생개시결정 당시의 금액보다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은 수입금액으로 392,405,276원, 순소득으로 147,777,169원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위 회생개시결정 당시의 적극재산보다 최소 147,777,169원 증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B을 상대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이 위 간이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은 사실상 저작권수입 미수금 채권 52,886,640원 및 저작재산권 평가액 397,475,600원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255곡의 음악저작권이 사실상 유일한 자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인 B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255곡의 음악저작권 중 대부분(254곡)을 차지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처분행위의 시점과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 또는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이나 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이나 양도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254개의 음악저작권 중 250개와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1개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간이조사보고서 조사기준일 당시인 2016. 6. 16. 기준으로 실사가치 평가액이 397,475,800원, 청산가치 평가액이 224,792,945원이었다. 한편 음악저작권의 객관적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권을 B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저작권 대리 중개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I에 가치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치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도 대금을 정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도 대금 330,000,000원을 기준으로 B의 사업소득세로 10,89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319,110,000원)을 2020. 10. 8. 및 2020. 10. 22. B 또는 B이 입금을 요청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④ 이 사건 양도계약시 B은 보유하고 있던 음악저작권 중 'G'에 대한 음악저작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⑤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별지